

#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이숙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기본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지만, 동 조례 이전에 제정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 
따라서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를 각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  
특히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경우 위촉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.  
따라서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, 위촉해제 및 결격사유를 추가·보완하고,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,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를 규정하고, 동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,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